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0가단1743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

피 고 1. B 주식회사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7. 8.

판 결 선 고 2022. 8. 1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,232,876원 및 그 중 250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4. 26.부터 2020. 6. 2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, 구상원리금 251,232,876원(원금 250,000,000원 + 2020. 3. 26.부터 2020. 4. 25.까지의 지연손해금 1,232,876원) 및 그 중 원금 250,000,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20. 4. 2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. 6. 2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원고가 주식회사 D(이하 ‘D’이라 한다)에게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D에게 부담하는 특약판매 대리점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을 2억 5,000만 원의 범위에서 보증하였고, D이 피고 회사의 외상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, 2020. 3. 26. E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 관련 외상물품대금 상당 보험금으로 2억 5,000만 원을 지급한 점,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계약서 정한 지급보증대상은 노무비 등이 제외된 물품대금으로서 보험금 정산서(을 제3호증)에 따르면 133,284,67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,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미경

별지